

●국토교통부공고 제2022-1407호

「주택법」 제63조 제6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투기과열지구 지정의 해제를 공고합니다.

2022년 11월 14일

국토교통부장관

투기과열지구 지정 해제

- 1. 지정해제 지역 : 경기도 수원시, 안양시, 안산시 단원구, 구리시, 군포시, 의왕시, 용인시 수지구·기흥구, 동탄2택지개발지구
- 2. 해제일 : 2022년 11월 14일
- 3. 효력발생시기 : 이 공고문은 공고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.

※ 투기과열지구 지정 현황

시·도	현 행	조 정 (2022.11.14.)
서울	서울특별시 전역 (25개區)	좌동
경기	과천시, 성남시 분당구, 광명시, 하남시, 수원시, 성남시 수정구, 안양시, 안산시 단원구 ^{주1)} , 구리시, 군포시, 의왕시, 용인시 수지구, 용인시 기흥구, 동탄2택지개발지구 ^{주2)}	과천시, 성남시 분당구, 성남시 수정구, 광명시, 하남시

주1) 대부동동, 대부남동, 대부북동, 선감동, 풍도동 제외

주2) 화성시 반송동·석우동, 동탄면 금곡리·목리·방교리·산척리·송리·신리·영천리·오산리·장지리·중리·청계리 일원에 지정된 동탄2택지개발지구에 한함